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5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각종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신속히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, 사업완료 3개월 이내에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존재할 수 있어 공개시한을 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함(안 제8조 제3항).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 량화된 평가지표에 의 한 측정을 통하여 시 범사업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 가</u> 결과를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 량화된 평가지표에 의 한 측정을 통하여 시 범사업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3개월 이 내</u> 제1항에 따른 시 범사업평가 결과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 량화된 평가지표에 의 한 측정을 통하여 시 범사업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 가 완료 후 1개월 이 내</u> 제1항에 따른 시 범사업평가 결과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시장은 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가</u>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시범사업평가) ① ~ 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<u>시범사업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</u>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p>